경기도 공고 제2019 - 264호

2019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경기도 소방공무원(항공분야)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Ⅰ. 시험개요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제34조(시험실시권)

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2. 채용 예정인원 : 3명(조종사/지방소방위 2명, 정비사/지방소방장 1명)

3. 채용일정

시험구분		시험일	시험장소	합격발표
• 응시원서 접수		2. 18.(월) ~ 2. 20.(수) (접수기간) 2. 21.(목) ~ 2. 25.(월) (취소기간)	• 원서접수 : 인터넷(http://www.119gosi.kr) • 신체검사 등 서류제출 : 등기우편 또는 인편 (4.11, 18:00까지 제출) 우편은 4.11 소인까지 인정 ※ 조종사 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으로 갈음	
• 실기시험	조종사	3. 12.(화) ~ 3. 15.(금)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4. 5.(금)
	정비사	3. 29.(금)		
• 신체검사		4. 11.(목)까지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 ※【붙임 6】 참조	4. 19.(금)
• 인·적성검사		4. 12.(금)	• 검사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면접위원 배 부
• 면접시험	조종사	5. 1.(수)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5. 17.(금) 최종 합격자
	정비사	5. 3.(금)	• 시험장소 등 세부사항 별도공고	

4. 실기시험 방법 및 평가내용

시험구분	평가방법	평가내용
조 종 사	시뮬레이터 및 구술평가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정 비 사	구술평가	정비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

5.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병역법」 제7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법령 제·개정시 변경된 법령에 의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2018. 10. 16. 일부개정, 2019. 4. 17. 시행]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분 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조 종 사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정 비 사	「항공안전법」 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기준일 : 최초시험(실기)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다만, 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일(예정일)까지로 함.

다.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위	조종	23세이상 45세이하
	지방소방장	정비	23세이상 40세이하

<응시상한 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1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 1-1참고)

마. 거주지 : 제한 없음.

Ⅱ. 원서접수

1.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 20.(수), 18:00 / 3일간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가능(취소기간 : 2.21. ~ 2.25.)

나. 접수방법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www.119gosi.kr) 사이트 접속접수

다. 사진등록

○ 반명함 증명사진, 사진파일(JPG, GIF,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 일부가 나타나지 않거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동물·식물·연예인 등 응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응시수수료 : 7,000원

○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추가비용 발생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포기로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취소 시 납부 응시료 환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조회 후 응시수수료 반환(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마. 가점 ※ 자격증 가점은 없음.

○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http://www.119gosi.kr)사이트에 접속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본인이 가점 표기

구 분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가 점	5%, 10%	3%, 5%

○ 원서접수 이후 실기시험 전일까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서류전형(제출) 기한까지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으로 증빙서류 제출

※ 2017년「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 시험단계별로 모두 적용

Ⅲ. 실기시험

1. 조종사 실기시험

가. 시험기간 : 2019. 3. 12.(화) ~ 3. 15.(금)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장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평가항목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조종사자격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실기시험은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정비사 실기시험

가. 시 험 일 : 2019. 3. 29.(금)

※ 당일 08:30까지 시험장 입장완료(시간 초과 시 시험장 입장 불가)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평가항목 : 정비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

라.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정비사자격증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금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실기시험은 각 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실기시험 합격자 공고

가. 공 고 일 : 2019. 4. 5.(금)

나. 공고방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 「알림마당」 의 「고시/공고」 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 「시험정보」 의 「신규채용」 란에 공고(공지)

※ 단계별 공고는 상기 공고방법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공지)

다. 공고내용 : 실기시험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일정 등

Ⅳ. 서류전형

1. 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4. 11.(목)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에 제출

- 학교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봉명리)
- 전 화 : 031) 329 - 0321 ~ 5

나. 제출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다.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헬기조종 분야	① 자력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비행경력증명서 1부.(최종비행일 명시)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원본 1부. 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원본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⑨「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
헬기정비 분야	①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 원본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라.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www.d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위・담당업무・근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③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됨.

④ 응시자 유의사항 : 인성・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서 미 응시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Ⅴ. 신체검사

1. 신체검사

가. 검사기한 : 2019. 4. 11.(목)

나. 검사장소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붙임6 참조)

※ 중앙소방학교에서 지정하지 않은 종합병원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다.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에 따라 검사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증명사진(3.5×4.5, 2매), 수수료(수수료는 응시생 부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신체검사서 제출 : 2019. 4. 11.(목) 18:00까지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에 제출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종면접시험일(예정)일 5일전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에 제출하여야 함.

<신체검사 주의사항>

◇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공무원 신체검사서 불인정)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2.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가. 공 고 일 : 2019. 4. 19(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나. 공고방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에 공고(공지)

<신체검사 합격기준>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적합한 사람 모두 합격(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별표5)

☞ 불합격 판정기준「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의 별표3에 의함

Ⅵ. 면접시험

1. 인·적성검사

가. 검 사 일 : 2019. 4. 12.(금)

나. 장　　소 : 별도공고

다.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등)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2. 면접시험

가. 시 험 일 : 조종사 2019. 5. 1.(수), 정비사 5. 3.(금)

나. 시험장소 : 별도공고

다. 시험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라.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 2단계 개별면접(블라인드 면접)

마.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바. 합격자 공고 : 최종 합격자 공고와 병행 발표

<면접시험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0,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Ⅶ.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가. 공고일시 : 2019. 5. 17.(금)

나. 공고방법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https://119.gg.go.kr)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https://119.gg.go.kr/academy)에 공고(공지)

<최종 합격기준>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Ⅷ. 응시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일정 및 정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시험(실기·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함.

○ 응시자는 시험(실기·면접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실시・면접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함.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3항 제5호 관련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신청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2.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 함.

○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종료 이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서류전형(제출) 기한까지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으로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가산점을 신청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표 출력 후 응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응시분야, 응시자격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3. 신체검사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 제출서식은 반드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함.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의 압인 도는 계인 처리 되어야 함.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함.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중앙소방학교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수검하고 신체검사서는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함.

5. 기타사항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실기, 면접 등)**
- 문의처 : 소방청 장비항공과
- 연락처 : 044) 205-7688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주)에니아소프트
- 연락처 : 043) 219-1332

◆ **제출서류 문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
- 문의처 : 031) 329 - 0321 ~ 5
- 홈페이지 : https://119.gg.go.kr/academy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11번길 42 (봉명리)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1-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5.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6.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7. 서류제출 채용기관 주소 및 연락처 1부.　끝.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별표5)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붙임 1-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붙임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0,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붙임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일시 : 실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류전형(제출) 기한까지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에 제출 완료하여야 함.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대상 : 채용시험이 실기 ·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시)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시 : 실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류전형(제출) 기한까지 경기도소방학교(인재개발팀)에 제출 완료하여야 함.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3% 또는 5%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호보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대상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 가산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붙임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붙임 5>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	체 중		kg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 6>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지역	주 소	전화번호
1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2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남양동)	033-570-7418
3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4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6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사랑관 지하2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7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1층 건강관리과	02-920-9114
8	국립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9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번지	064-740-5359
10	중앙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22)	064-786-7282
11	한마음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52(이도2동)	064-750-9199
12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064-717-1580
13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산월동)	062-602-6114
14	상무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치평동)	062-600-7000
15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000
16	구미 순천향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1-6288
17	포항 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054-272-0151
18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삼룡동)	041-570-7200
19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20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웅진동)	041-962-1111
21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3-2191
22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칠암동, 진주고려병원)	055-751-2422
23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두모길 16-16(두모동)	055-680-8700
2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280
25	김해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삼계동)	055-330-0268
26	대자인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063-250-8770
27	예수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063-280-8114
28	원광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063-859-1300
29	정읍아산병원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063-530-6625
30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28547)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043-279-2366
31	하나병원	충청북도	(28378)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1262	043-230-6584
32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27486)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244
33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충청북도	(29031)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	043-730-7101
34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555
35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114
36	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031-780-6239
37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2가)	053-200-5791
38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동산동)	053-250-7689
3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	053-650-3434
40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447

41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63-940-7025
42	영남대학교의료원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43	의료법인 운경의료재단 곽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31(수동)	053-605-3591
44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45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1661-0033
46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84
47	좋은삼정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052-220-7535
48	구포성심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86(구포동)	051-330-3996
49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87(명륜동)	051-550-9300
50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 109번길 27(안락동)	051-520-5546
51	부산광역시 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거제동)	051-607-2491
5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아미동1가)	051-240-7891
53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용호동)	051-933-7672
54	광혜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96(온천동)	051-504-2112
55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남천동)	051-610-9873
56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덕천동)	051-330-3028
57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우동)	051-602-8137
58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좌천동)	051-664-4054
59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좌동)	051-797-0370
60	일신기독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27(좌천동)	051-630-0417
61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범천동)	051-608-0270
62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양정동)	051-850-8763
63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051-601-6141
64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봉래동3가)	051-410-6700
65	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1106
66	한마음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21	055-267-7746
67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45	055-270-1052
68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055-280-0396
69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158	055-233-6010
70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055-230-1591
71	의료법인 합포의료재단 MH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055-240-7471
72	진해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32번길 13	055-548-7794
73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74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061-330-6114
75	순천성가롤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76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061-690-6000
77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042-280-8535
78	대청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322(정림동 716)	042-589-6553~4

<붙임 7>

서류제출 채용기관 주소 및 연락처

채용기관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자
경기소방학교 (인재개발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	031-329-0322	구성림